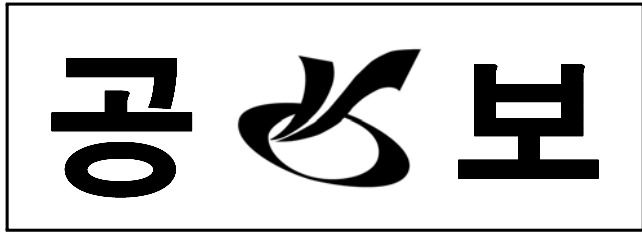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583호

2007년 6월 18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31호 지적측량기준점(지적삼각보조조점, 지적도근점)고시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39호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 대행업체 모집공고 8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41호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, 녹지) 입안(안)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공람 공고 11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46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3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문화공보과

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31호

지적측량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 고시

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예정지적좌표 작성을 위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, 동법시행규칙 제59조(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)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을 고시합니다.

2007년 6월 14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I 개 요

1.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(이하 좌표와 같음)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
		X좌표(m)	Y좌표(m)
별지참조			

2. 좌표

3. 소재지와 측량년월일

- 지적보조삼각점 7점(오류동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일원, 2007년 4월 3일)
- 지적도근점 79점(오류동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일원, 2007년 3월 28일)

4. 측량성과보관장소

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또는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 서구지사

II 열람안내

-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지적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I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(☎560-48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】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	
		원점	X 좌표(m)	Y 좌표(m)
보38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5025.48	-6703.80
		중부	455178.12	168024.85
보93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3988.03	-10634.02
		중부	454152.61	164091.36
보94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4821.21	-10006.57
		중부	454983.92	164721.34
보95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5604.37	-9262.29
		중부	455764.82	165468.02
보96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4464.33	-8408.13
		중부	454622.19	166318.75
보97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3443.74	-8851.38
		중부	453602.92	165872.40
보98	지적삼각보조점	계양	3566.11	-9696.45
		중부	453727.85	165027.67
5297	지적도근점	계양	3553.89	-9956.10
		중부	453716.42	164767.98
5298	지적도근점	계양	3565.62	-9951.64
		중부	453728.14	164772.47
5299	지적도근점	계양	3551.15	-10002.39
		중부	453713.83	164721.68
5300	지적도근점	계양	3535.11	-10116.54
		중부	453698.14	164607.47
5301	지적도근점	계양	3610.29	-10264.34
		중부	453773.77	164459.90
5302	지적도근점	계양	3670.48	-10418.59
		중부	453834.42	164305.83
5303	지적도근점	계양	3790.32	-10478.54
		중부	453954.44	164246.24
5304	지적도근점	계양	3876.92	-10402.04
		중부	454040.82	164323.00
5305	지적도근점	계양	4043.11	-10256.54
		중부	454206.57	164469.00
5306	지적도근점	계양	4130.62	-10176.55
		중부	454293.85	164549.27
5307	지적도근점	계양	4288.41	-10037.23
		중부	454451.22	164689.07
5308	지적도근점	계양	4446.74	-9897.56
		중부	454609.12	164829.22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	
		원점	X 좌표(m)	Y 좌표(m)
5309	지적도근점	계양	4617.96	-9764.83
		중부	454779.93	164962.47
5310	지적도근점	계양	4766.32	-9621.19
		중부	454927.85	165106.56
5311	지적도근점	계양	4930.11	-9485.78
		중부	455091.23	165242.47
5312	지적도근점	계양	5109.06	-9390.71
		중부	455269.89	165338.09
5313	지적도근점	계양	5108.66	-9268.49
		중부	455269.12	165460.31
5314	지적도근점	계양	5208.81	-9167.41
		중부	455368.96	165561.69
5315	지적도근점	계양	5318.82	-9066.15
		중부	455478.66	165663.29
5316	지적도근점	계양	5446.81	-8956.42
		중부	455606.32	165773.41
5317	지적도근점	계양	5566.81	-8854.36
		중부	455726.01	165875.84
5318	지적도근점	계양	5606.83	-9127.74
		중부	455766.87	165602.58
5319	지적도근점	계양	5411.02	-8762.60
		중부	455569.94	165967.13
5320	지적도근점	계양	5252.58	-8648.52
		중부	455411.15	166080.73
5321	지적도근점	계양	5123.38	-8635.39
		중부	455281.91	166093.47
5322	지적도근점	계양	5084.31	-8718.56
		중부	455243.09	166010.18
5323	지적도근점	계양	5021.77	-9141.51
		중부	455181.84	165587.02
5324	지적도근점	계양	5048.31	-8986.11
		중부	455207.91	165742.51
5325	지적도근점	계양	5020.69	-8580.62
		중부	455179.06	166147.92
5326	지적도근점	계양	5064.08	-8390.63
		중부	455221.86	166338.06
5327	지적도근점	계양	5181.80	-8278.84
		중부	455339.23	166450.20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	
		원점	X 좌표(m)	Y 좌표(m)
5328	지적도근점	계양	4909.74	-8374.19
		중부	455067.47	166354.03
5329	지적도근점	계양	4791.85	-8290.15
		중부	454949.34	166437.72
5330	지적도근점	계양	4614.93	-8322.61
		중부	454772.52	166404.73
5331	지적도근점	계양	4603.35	-8438.49
		중부	454761.30	166288.82
5332	지적도근점	계양	4595.75	-8518.73
		중부	454753.94	166208.56
5333	지적도근점	계양	4505.08	-8509.47
		중부	454663.24	166217.54
5334	지적도근점	계양	4408.43	-8455.81
		중부	454566.43	166270.90
5335	지적도근점	계양	4392.91	-8378.82
		중부	454550.67	166347.84
5336	지적도근점	계양	4324.00	-8336.38
		중부	454481.63	166390.06
5337	지적도근점	계양	4267.24	-8299.64
		중부	454424.76	166426.62
5338	지적도근점	계양	4210.41	-8278.70
		중부	454367.86	166447.39
5339	지적도근점	계양	4202.81	-8243.00
		중부	454360.15	166483.07
5340	지적도근점	계양	4195.16	-8172.96
		중부	454352.28	166553.10
5341	지적도근점	계양	4155.33	-8053.44
		중부	454312.08	166672.49
5342	지적도근점	계양	4078.24	-8082.55
		중부	454235.08	166643.14
5343	지적도근점	계양	4061.35	-8009.41
		중부	454217.96	166716.24
5344	지적도근점	계양	4088.26	-7955.91
		중부	454244.71	166769.83
5345	지적도근점	계양	3988.74	-7933.66
		중부	454145.12	166791.77
5346	지적도근점	계양	3885.03	-7927.77
		중부	454041.39	166797.34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	
		원점	X 좌표(m)	Y 좌표(m)
5347	지적도근점	계양	3780.77	-7979.10
		중부	453937.29	166745.69
5348	지적도근점	계양	3653.50	-8038.32
		중부	453810.20	166686.09
5349	지적도근점	계양	3672.48	-8141.25
		중부	453829.50	166583.21
5350	지적도근점	계양	3666.08	-8275.13
		중부	453823.51	166449.31
5351	지적도근점	계양	3657.51	-8455.19
		중부	453815.49	166269.23
5352	지적도근점	계양	3649.82	8631.20
		중부	453808.34	166093.20
5353	지적도근점	계양	3645.21	-8764.50
		중부	453804.13	165959.89
5354	지적도근점	계양	3649.65	-8822.95
		중부	453808.75	165901.45
5355	지적도근점	계양	3629.53	-8938.65
		중부	453788.98	165785.69
5356	지적도근점	계양	3836.51	-9007.99
		중부	453996.18	165716.98
5357	지적도근점	계양	3920.97	-8954.51
		중부	454080.48	165770.71
5358	지적도근점	계양	4032.56	-8959.83
		중부	454192.09	165765.73
5359	지적도근점	계양	4238.67	-9041.77
		중부	454398.45	165684.42
5360	지적도근점	계양	4312.96	-8908.40
		중부	454472.34	165818.03
5361	지적도근점	계양	4354.85	-8816.12
		중부	454513.96	165910.43
5362	지적도근점	계양	4398.77	-8676.91
		중부	454557.45	166049.78
5363	지적도근점	계양	4405.96	-8513.23
		중부	454564.14	166213.48
5364	지적도근점	계양	4098.91	-9210.31
		중부	454259.21	165515.44
5365	지적도근점	계양	3993.46	-9357.78
		중부	454154.20	165367.64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	
		원점	X 좌표(m)	Y 좌표(m)
5366	지적도근점	계양	3886.00	-9482.38
		중부	454047.12	165242.71
5367	지적도근점	계양	3867.55	-9569.21
		중부	454028.93	165155.82
5368	지적도근점	계양	3853.01	-9633.42
		중부	454014.59	165091.57
5369	지적도근점	계양	3752.38	-9754.96
		중부	453914.31	164969.72
5370	지적도근점	계양	3618.46	-9916.16
		중부	453780.88	164808.11
5371	지적도근점	계양	3875.64	-10546.68
		중부	454039.96	164178.36
5372	지적도근점	계양	4704.58	-9867.82
		중부	454866.86	164859.75
5373	지적도근점	계양	5588.43	-8970.57
		중부	455747.99	165759.70
5374	지적도근점	계양	5001.48	-8495.55
		중부	455159.59	166232.93
5375	지적도근점	계양	4179.72	-8973.21
		중부	454339.29	165752.80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39호

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 대행업체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위탁업체를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07년 6월 11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업내용

가. 대 상 :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

나. 대행기간 : 대행계약체결일로부터 2008.12.31일까지

- 2009년 재활용품 선별 위탁 계약이 지연될 경우 동 계약 체결시까지 선별업무를 대행 하여야 함.

다. 업무범위 :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

라. 예정가격

구 분	기 준(안)	비 고
지급방식	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따른 선별료는 톤당 일만이천일십칠원(W 12,017원/톤)을 지급하기로 한다.	- 연간 선별 예상량(반입량) : 6,400톤

2. 공고기간 : 2007. 6. 13(수) ~ 2007. 6. 20(수)

3. 접수기간 : 2007. 6. 13(수) ~ 2007. 6. 20(수) 17:30까지 (봉인 후 제출)

4. 접 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(☎560-4410~5)

5. 접수방법 : 인편(우편 등 기타방법 불가)

6. 응모자격

○ 우리구 재활용품 1년내 최대 발생량의 10일간 입하량인 22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(부지면적2,500㎡이상)를 확보한 업체

- 선별장 내 수집운반차량을 제공 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처리능력이 10마력 (12톤/시간) 이상, 길이가 30m이상인 자동선별기기를 갖춘 업체
- 사무실 및 선별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관내 소재에 한함.
-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대책의 확보(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제출 가능업체)
- 각종 세금(지방세, 국세) 체납이 없는 업체

7. 선정방법 :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1개 업체 선정

가. 심사 및 선정

- 1차 :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참가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(서류미필자포함)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- 2차 :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총점합계가 높은 순으로 업체 선정

나. 선정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1개업체를 선정함.

8. 계약체결 : 2007. 7월 중

9. 계약자의 의무

- 재활용품 수집·운반업체가 수집·운반한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활한 선별 및 잔재쓰레기 자체처리
-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(월평균533톤기준)증권을 본 계약체결 시 제출(연간 단위)
-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, 익월5일까지 선별처리 실적을 제출
- 재활용품을 선별 후 발생된 잔재쓰레기는 계약자 책임하에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
- 대행료 청구 시 잔재쓰레기 처리근거를 첨부하여 결과보고
-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선별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재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

10. 구비서류

- 신청서 2부(구청 비치)
- 사업계획서 1부
 -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
 - 사업개요
 - 사업자등록증
 - 재정상태 : 최근 2년간 결산재무재표 등
 - 처리실적 : 최근 2년간 처리실적(증빙서류첨부)
 - 운반거리 명기(인천 서구청~현장)
 - 선별인원(피고용자 의료보험가입여부증명원)

- 잔재쓰레기 처리계획서 1부
- 선별사업장 부지 현황
 - 지적도 1부
 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
 - 토지대장등본 1부
 - 토지등기부등본(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) 1부
 - 시설물배치평면도 1부
- 장비현황(계근대, 자동화 선별기기)증명서류 1부
- 지방세, 국세 완납증명서
- 기타 용모관련 증빙서류

11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는 선정 취소함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41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녹지)입안(안)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공람 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녹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에 대하여 공람공고 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(공고일로부터 14일간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7년 6월 13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 내용

가. 교통시설

○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1	301	10	국지 도로	4	경서동 699	경서동 678-2	일반 도로	경서동		
신설	소로	1	302	10	국지 도로	4	경서동 698	경서동 678-2	일반 도로	경서동		

나. 공간시설

○ 녹 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녹지1	녹지	완충 녹지	경서동 678-2번지 일원	1,925.3			1993.6.12	
변경		녹지	완충 녹지	경서동 678-2번지 일원		감 80	1,845.3		도로신설에 따른 녹지감소

3. 공람도면 : “생략”

4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46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]

1.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
2.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07년 6월 14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07. 6. 14 ~ 2007. 6. 29
2.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			
2. 당사자	성 명	윤록수외 15인 ("불임" 위반차량내역 참조)		
	(차량번호)			
	주 소			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	"불임" 참조			
4. 처분하고자하는내용	과태료 부과, 점검·정비·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			
5. 법 적 근 거	자동차관리법 제84조, 동법 제37조			
6. 의 견 제 출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명	교통행정과
	주 소	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(심곡동 244) (☎ 560-4872, FAX 560-4869)		
	기 한	2007년 6월 29일까지		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, 컴퓨터통신,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□ 위반차량내역

연번	당 사 자		위 반 사 항			비 고
	성 명	주소(사용본거지)	차량번호	위반내용	위반법규	
1	윤록수	인천시 서구 석남3동 487 덕산@ B동 513호	07다 4599	전면 불법등화 설치	제29조1항	
2	안대수	인천시 서구 마전동 685-13 이지화인@ 807호	45보 3540	방향지시등 초록전구사용	제29조1항	
3	이정석	인천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3블록1~19롯데 대주@ 703동 506호	28머 1433	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운영	제10조4항	
4	노금식	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0-2 신화빌라 2동 201호	인천31고 1763	봉인탈락	제10조3항	
5	오승훈	인천시 서구 연희동 731-16 세동주택 B동 402호	인천35노 2575	철재범퍼 부착	제29조1항	
6	장종진	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69블록1외 2필지 엘지원당자이@ 705동 303호	86구 4542	봉인탈락	제10조3항	
7	장현화	인천시 서구 공촌동 307-42 덕수빌라 3동 202호	인천34도 8549	등화상이(청색)	제29조1항	
8	김영환	인천시 서구 연희동 705-10 401호	06서 7001	안전기준위반 (전면불법등화설치 등)	제29조1항	
9	지찬오	인천시 서구 연희동 730-14 무지개주택 라-401	인천83다 3029	안전기준위반 (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)	제29조1항	
10	김은미	인천시 서구 연희동 711-18 201호	52도 7535	뒤 철재범퍼가드 설치	제29조1항	
11	조철환	인천시 서구 가좌2동 30-102 진주@ 501동 105호	59무 5552	방향등청색(전.후),불법등화, 번 호등 제거(불법등화설치)	제29조1항	
12	오성일	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59블록 검단1차 대주피오레@ 101동 906호	86무 1290	격벽제거, 타이어외부돌출	제34조	
13	김동민	인천시 서구 공촌동 316 주천그린빌라 B02호	27누 9307	안전기준위반 (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)	제29조1항	
14	임종태	인천시 서구 삼곡동 259-4 극동아파트 108동 209호	인천35러 1046	안전기준위반 (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)	제29조1항	
15	여운빈	인천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@ 110동 901호	86서 4316	후미등클리어렌즈	제29조1항	
16	서성길	인천시 서구 석남1동 466-1 현광@ 나동 407호	34거 1430	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(전면)	제29조1항	